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6. 19 선고 2020가단11335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6. F

7. G

8. H

9. I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

담당변호사 정민호, 권택곤, 박병희

피고J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6. 1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1993. 1. 20. 접수 제3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배은창

별지